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정 1992. 6. 1 상공부 고시 제1992- 17호
개정 1993. 1. 5 상공부 고시 제1993- 54호
개정 1993. 8.27 상공부 고시 제1993- 65호
개정 1994. 8. 3 상공부 고시 제1994-106호
개정 1995.12.13 통상부 고시 제1995-115호
개정 1996.11. 6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6-12호
개정 1998. 6. 2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5호
개정 1999. 1.14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 1호
개정 1999. 3.16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 9호
개정 1999. 6.12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2호
개정 2000. 2.2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 9호
개정 2000. 6.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14호
개정 2002. 2.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 1호
개정 2004. 3.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 3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7호
개정 2014. 2.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4. 2. 10>
2. “상근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당해 상담회사에만 상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정규직원을 말한다.
3. “비상근전문인력”이란 영 별표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담회사가 영 위하는 사업에 사안별 업무협약의 형태로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정규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창업강좌기관”이란 창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전담인력 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창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창업동아리”란 대학(교)의 총(학)장 및 초·중·고등학교장이 승인한 동아리로서 학교내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창업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및 창업아이템 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개정 2008. 8. 25>
6. “비즈쿨 운영학교”이란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된 초·중·고·대학을 말한다.
<신설 2008. 8. 25>

제 2 장 상 담 회 사

제3조(등록요건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8. 25>

1.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영 별표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기술분야 구분없이 2인 이상이 상근 전문인력일 것 <개정 2014. 2. 10>

2-1. 영 별표 7호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경영분야>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서 5년이상 보육매니저로 종사한 자

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신설 2014. 2. 10>

<기술분야>

다. 중소기업청 연구관으로 5년이상 중소기업지원 사무에 종사한 자 <개정 2014. 2. 10>

라.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신설 2014. 2. 10>

3. 상담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 한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상담회사의 등록이 취소될 당시 당해 상담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인 자

4. 상담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고 상근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의자, 전산기기, 상담업무와 관련된 도서·자료와 그 보관용 책장, 기타 집기 등을 보유할 것

5. 별표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상담회사로서의 사업수행에 적합할 것

② 상담회사는 전문인력의 해직 등으로 제1항제2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때에는 해직일로부터 30일내에 충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7>

제4조(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5>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 관
3. 사업계획서(별표1의 서식)
4.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상근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개정 2014. 2. 10>

② 상담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

1. 법인등기부(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자본금, 주식, 사업목적 등의 변경 시에 한함)
2. 정관(법인등기부와 동일한 변경의 경우는 생략)
3.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전체)
4.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변경인력의 국민연금보험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와 제2항의 규정의 신고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규칙 별지3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업무감독·운영상황보고·실태조사등의 관리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제5조(계약의 체결등) 상담회사가 창업자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8. 25>

1. 고객의 성명 또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업종 및 품목
2. 계약일 및 용역수행기간
3. 용역의 내용·범위·방법 및 조건
4. 용역비 및 그 징수방법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상담회사의 지원)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담회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5>

②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금의 지원은 창업지원계획과 당해 용역대금의 80/100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8. 8. 25>

1. 창업예비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2. 창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지도용역
3. 창업자에 대한 절차대행용역
4.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용역

제7조(상담내용의 보안유지) 상담회사는 상담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창업교육

제8조(창업강좌기관의 지원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강좌를 실시하는 기관중 강좌에 필요한 시설, 인력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시·군·구의 창업관련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창업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전액을 창업지원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강좌의 신청 절차, 선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교육비용의 지원)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창업강좌 기관은 창업강좌 실시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좌실시에 따른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8.25>

제 4 장 창업동아리

제10조(대학 창업동아리 지원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의 창업연구와 창업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및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활동 촉진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창업동아리간에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창업동아리의 활동이 지원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창업동아리 지정을 취소하고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창업동아리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활동비의 지원)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동아리는 창업아이템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동아리가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제 5 장 비즈쿨 운영학교 <신설 2008.8.25>

제12조(비즈쿨 운영학교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청소년들의 창업교육과 기업이 정신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고·대학교를 비즈쿨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비즈쿨 운영학교의 활동이 지원 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즈쿨 운영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8.8.25>

③ 비즈쿨 운영학교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 8. 25>

제13조(활동비의 지원)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즈쿨 운영학교는 교재개발, 전문교사 양성 등 청소년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즈쿨 운영학교가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제 6 장 창업지원업무의 사후관리

제14조(창업지원자금 등의 지원중단 및 회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기관이 별표2에 해당될 때에는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창업지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방법 및 절차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업무운용상황보고등) ① 상담회사 등 이 요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창업지원기관은 반기별 업무운용상황을 별지1의 서식에 따라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업무운용상황보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창업지원법령 및 이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자는 필요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5>

④ 중소기업청장은 컨설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상담회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0>

제16조(사후관리결과의 조치절차) ①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3의 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08. 8.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통보 받은 창업지원기관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기관이 제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제17조(이 규정의 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0. 6. 29>

제1조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등록 신청한 상담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가 제7조에 의한 변경 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2008-47호, 2008. 8. 25>

제1조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등록 신청한 상담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가 제4조에 의한 변경 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2014-6호, 2014. 2. 10>

제1조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등록 신청한 상담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가 제4조에 의한 변경 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표 1 】

중소기업상담회사 사업계획서

(제4조제1항제3호 관련)

I. 회사현황

1. 회사개요

- 명 칭 : 한글, 한자, 영문 명칭을 기재
- 대표자 : 한글·한자성명 및 인적사항 기재(이력서 별도첨부)
- 소재지 : 주소 및 전화·모사전송 번호 표기
- 설립 및 등기일자
- 주요사업 내용

2. 자본금 및 출자방법

- 자본금 (수권 및 납입자본금)
- 발행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가격
- 출자방법
- 주주구성 및 주주별 소유주식수
 - 대주주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이 포함된 이력서 별도첨부

3. 조직 및 임직원 현황

가. 조직

- 조직도
- 부서별 기능

나. 임직원 현황(외부전문인력 포함)

-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취득 현황 및 주요 업무내용 등 작성
 - 전문인력은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상근여부를 추가기재하고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와 이력서를 별도제출

4. 창업관련 용역실적(신규설립시 임직원의 개인실적)

- 용역수행자별 용역제공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개시일, 용역기간 및 내용 기재(용역수행자 인적사항이 표기된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별도제출)

II.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중점 사업대상지역 및 분야

3. 주요 사업계획의 추진일정

※ 주요 사업별 향후 5년간 계획을 작성

4. 사업 수행능력의 검토

- 창업지원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능력 검토
(인력, 장비 등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주요사업 수행능력을 기술)

5.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일정 (5년간)

- 사업별 지원 업체수 및 방법
 -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
-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확충계획
- 창업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가공 및 공급
- 지원업체에 대한 후속지원
- 관련기관과의 업무제휴
-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재무제표, 수익·비용명세등 별도제출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창업지원기관	지원중단 및 회수기준	
상담회사	회수	1.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때 3. 지원 받은 사업비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회수 또는 지원 중단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업비 및 용역 의뢰자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클 때 2. 기타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과 이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창업강좌기관, 창업동아리 비즈쿨운영학교	회수	1. 지정이 취소될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때 3. 지원 받은 사업비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회수 또는 지원 중단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과 이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사업비의 중단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 3. 지정신청당시의 사업계획에 비하여 현격히 차이가 있어 당초와 같은 목표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별지 1 】 <개정 2014. 2. 10>

중소기업상담회사
년도 상/하반기 업무운용상황보고

상담회사명:										
상담회사 등록번호	-		상담회사 등록일	년	월	일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 -		회 사 설립일	년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협회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비가입	전 화	()			F A X	()		
소 재 지							사업장 면적	㎡		
사무실 보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임차보증금 : 원					
상근 인력현황	경영분야 전문인력				기술분야 전문인력				기타 상근 인력	계
	박사	지도사	회계사	변호사	박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명
홈페이지					E-mail					
전기 매출액 (재무제표)	백만원									

1. 상담업무 추진내역

년 상/하반기

(단위 : 건수)

구 분	전체상담건수		상담건 중 계약 현황			
	당반기 건수	당해년누계	총계 (a=b+c+d)	진행(b)	취소(c)	용역완료(d)
사업타당성검토						
창업절차 대행						
공장설립대행						
경영·기술지도 등 경영기술컨설팅						
자금조달·운영에 대한 자문 및 대응						
각종 정보 제공						
기 타 용 역						
계						

※ 정부지원용역을 포함한 모든 상담건을 용역별로 구분하고 기타용역란에는 그밖에 분류되지 않은 용역건 기재

2. 계약금액 내역

(단위 : 건, 천원)

계 약 체 결		당해연도 누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건수는 “1. 상담업무 추진내역” 계약현황의 총계란의 계와 일치

3. 당 반기 용역별 내역

(단위 : 건, 천원)

구분	사업성검토	창업절차 대행	공장설립 대행	경영·기술 진단지도	자금 조달	정보제공	기 타	계
건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창업)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금액								천원
(*창업)								천원

※ 당 반기 전체 계약건에 대하여 용역별로 구분하고 해당용역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창업’란에도 표시

4. 정부지원 내역

(단위 : 건, 천원)

구 분	당 반기		당해연도 누계	
	계약건수	계약금액	계약건수	계약금액
사업명				
사업명				
계				

※ 당반기 계약건 중 정부지원 내역 및 규모

** 당해연도 누계 : 당반기와 전반기의 계약건 및 금액 누계(취소된 계약건은 제외)

5. 인력보유 현황

구분	성명	직위	전문분야	보유자격	근무기간	비고
상근 전문인력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비상근 전문인력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기타상근 인력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 당 반기 변동인력을 포함한 인력 모두 기재하고 변동이 있었던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할 것

6. 건의사항

-
-

【 별지 2 】

제 재 조 치 건 의 서

1. 개 요

- 창업지원기관명
- 소재지, 대표자
- 자본금, 주주구성
- 창업지원자금 지원내역

2. 창업지원법령 위반내용

3. 법령위반의 귀책 등 참고의견

4. 제재요망 사항

【 첨 부 】 관련자료 1부.